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85,121,247	122,553,637
일반회계	3,528,762,723	105,862,882
특별회계	556,358,524	16,690,756
공기업특별회계	279,547,284	8,386,419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79,547,284	8,386,419
기타특별회계	276,811,240	8,304,337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14,199,908	425,997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2,637,148	679,1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4,037,070	6,121,112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6,881,121	506,43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982,000	479,46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73,993	92,2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537,88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